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1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
발 의 자: 이병운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민병주, 박상혁, 박영한, 서상열, 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이민석, 이봉준, 이새날, 이성배, 이숙자, 이종태, 이희원, 임춘대, 최민규, 최윤희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38명)

1. 제안이유

-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한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음
- 이에 대중교통요금 조정 시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내실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청취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
- 나. 조문 체계와 형식을 고려하여 조문을 수정함 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도시철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위한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견청취 전에”를 “위해”로, “수렴해야”를 “수렴하고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)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<u>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</u>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<u>수렴해야</u> 한다.</p>	<p>제10조(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) ----- -- <u>위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렴하고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</u> -- -.</p>
<p>제17조(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) ① (생략)</p>	<p>제17조(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(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)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견 청취 시 시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추 계 분 석 관	이홍래

☎ 02-2180-7952
e-mail : hongl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